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796호 2022. 9. 15.(목)

## 조 례

- 사천시 조례 제1862호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----- 1
- 사천시 조례 제1863호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----- 9
- 사천시 조례 제1864호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----- 11
- 사천시 조례 제1865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----- 13

## 규 칙

- 사천시 규칙 제800호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 ----- 14

## 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022-194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 고시 - 17
- 사천시 고시 제2022-195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- 18
- 사천시 고시 제2022-196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----- 19

## 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2022-1271호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 20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# 사 천 시 공 보

제796호

사천시 조례 제1862호

제2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2년 9월 15일

사천시장 박 동 식

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의 입법 또는 법률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① 사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입법 및 법률고문(이하 “고문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입법관련 자문
2. 의회 관련 법령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
3.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·처리에 관한 자문
4.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

# 사 천 시 공 보

제796호

5.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

6. 사천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

7.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·법률사항의 자문 등

② 고문은 직무 관련 강의를 할 수 있으며,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 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조(위촉) 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업 중인 변호사, 법률학 교수,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4조(위촉 해제)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

2.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 하거나 소홀한 경우

3.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

# 사 천 시 공 보

제796호

4.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
5.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사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
6. 의회의 자문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

7.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5조(임기)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입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자문 요청 등) ①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,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의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아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의장은 입법 또는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자문수당)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796호

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소송비용 등) 고문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수입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「사천시 법률고문 변호사 운영조례」를 준용하여 지급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승낙서

본인은 「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을 승낙합니다.

년 월 일

소속

직위

성명

(인)

사천시의회의장 귀하

# 위 축 장

소속

직위

성명

「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」가

정하는 바에 따라 귀하를

사천시의회의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.

(위촉기간: 20○○. ○. ○. ~ 20○○. ○. ○.)

년 월 일

사 천 시 의 회 의 장

## 자문 의뢰서

수신 :

<b>의뢰자</b>	소속)	성명)
<b>구분</b>	예) 행정감사, 시정질문, 쟁송사건, 의회운영	<b>의뢰일자</b>
<b>제목</b>		
<b>사실관계</b>	※ 자문할 사안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요약	
<b>자문내용</b>	※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	

<b>의뢰자의견</b>	※ 가급적 작성하되 작성이 곤란한 경우 생략 가능, 상반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 갑설,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
<b>참고사항 (관련법규)</b>	※ 관련 법령, 조례 등을 기재하고 해당 자료 첨부



## 자 문 기 록 부

자문사항				회신결과		
년월일	자문방법	의뢰인	의뢰내용	년월일	고문인	회신내용

- ※ 자문방법에는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 기재
- ※ 의뢰내용 및 회신내용은 필요시 별지작성 가능

# 사 천 시 공 보

제796호

사천시 조례 제1863호

제2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물품  
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2년 9월 15일

## 사천시장 박 동 식

###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

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시장”을 “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75조”를  
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5조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 )을  
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 )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불용품폐기(해체)조서”를 “불용품폐기(해체)조서”로,  
“폐기 하여야”를 “폐기하여야”로 한다.

제23조제3항 중 “물품관리관리”를 “물품관리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

# 사 천 시 공 보

제796호

항 중 “물품관리관” 을 “물품관리관은” 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2조” 를 “제23조” 로, “다음의 구분” 을 “다음 각 호” 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하며, 제12조에 따른” 을 “하며,” 로 한다.

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(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) 시장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사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796호

사천시 조례 제1864호

제2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2년 9월 15일

사천시장 박 동 식

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해 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,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서예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사업) ① 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서예교육 관련 연구·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
2. 서예 창작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

# 사 천 시 공 보

제796호

3.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

4. 그 밖에 시장이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4조(경비지원)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사천교육지원청, 서예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796호

사천시 조례 제1865호

제2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2년 9월 15일

## 사천시장 박 동 식

###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

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5호 중 “정신병원, 격리병원” 을 “격리병원” 으로 한다.

제24조제4호 중 “정신병원, 격리병원” 을 “격리병원” 으로 한다.

제25조제4호 중 “정신병원, 격리병원” 을 “격리병원” 으로 한다.

제61조제3항 중 “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” 를 “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” 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796호

사천시 규칙 제800호

사천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2년 9월 15일

## 사 천 시 장 박 동 식

###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

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바목 중 “사천시”를 “사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사천시 소속”을 “시 소속”으로, “사천시에”를 “시에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본문 중 “시장”을 “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 중 “시(市)에”를 “시에”로 한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제13조의3제3호 중 “전가”를 “전가(轉嫁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”을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
# 사 천 시 공 보

제796호

는” 으로, “산하기관에” 를 “단체에 공무원” 으로 하며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” 을 “제4호 각 목의” 로, “산하기관” 을 “단체” 로 한다.

가.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

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

다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

제14조의3제2항 전단 중 “서면” 을 “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 으로 한다.

제16조를 삭제한다.

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직무관련 공무원” 을 “직무관련공무원” 으로 한다.

제21조제6항 전단 중 “금품 등” 을 “금품등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

# 사 천 시 공 보

제796호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,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, 제1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796호

사천시 고시 제2022-194호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 및 변경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2. 9. 15.

## 사 천 시 장

연번	승인번호	(변경)승인 연월일	목적	위치	면적	승인 기간	피승인자	
							주소	성명
1	2022-15	2022.9.8.	실안낙조 포토존 설치공사를 위한 가도	사천시 실안동 1248	676.2	2022.9.8.~ 2023.12.31.	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	사천시청 (관광진흥과)
2	2022-16	2022.9.8.	실안낙조 포토존 설치	사천시 실안동 1248	476	2022.9.8.~ 2036.12.31.	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	사천시청 (관광진흥과)
3	2022-17	2022.9.8.	거북선길 경관 정비 위한 가도	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880-1	378.9	2022.9.8.~ 2023.12.31.	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	사천시청 (관광진흥과)
4	2022-18	2022.9.8.	거북선길 경관 정비(석방림)	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880-1	2,206.2	2022.8.4.~ 2036.12.31.	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	사천시청 (관광진흥과)
5	2022-19 (기간연장)	2022.9.8.	전력공급용 해저 케이블	사천시 신수동 60번지 선 일원	47	2019.10.1. ~2022.9.30. ⇒ 2022.10.1. ~2025.9.30.	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	사천시청 (지역경제과)

# 사 천 시 공 보

제796호

사천시 고시 제2022-195호

##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2. 9. 15.

## 사 천 시 장

신 청 자		점용 · 사용 승인사항				실시계획 신고 수리사항		공사완료 신고수리
주 소	성 명	승인번호 (연월일)	승인기간	위 치	면적(㎡)	신고번호 (신고일자)	공사내역	
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	사천시장 (해양수산 과장)	2022-5 (2022.5.9.)	2022.5.9. ~2051.12.31.	용현면 주문리 928-2번지	1,009.6	2022-6 (2022.5.25.)	어선접안용 부잔교	2022.6.29.
		2022-3 (2022.4.19.)	2022.4.19. ~2051.12.31.	용현면 신촌리 555-6번지선	701.2	2022-5 (2022.4.27.)	어선접안용 부잔교	2022.6.29.
		2021-17 (2021.12.28.)	2021.12.28. ~2035.12.31.	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379-9번지선 일원	605	2022-3 (2022.3.11.)	어촌정주어항 시설정비 (물양장 정비 1식)	2022.7.1.

# 사 천 시 공 보

제796호

사천시 고시 제2022-196호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

『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2. 9. 15.

## 사 천 시 장

연 번	점용 사용 승인사항				실시계획 신고수리사항			신고자	
	승인번호 (승인일)	승인기간	위치	면적	신고번호 (신고일자)	공사기간	공사내역	주소	성명
1	2022-13 (2022.8.4.)	2022.8.4~ 2036.12.31.	서포면 비토리 5-211번지선 일원 (하봉항)	690.2 직:48.0 간:642.2	2022-9 (2022.8.26.)	2022.8.26.~ 2022.8.31.	해상부유구조물 (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) 설치	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	사천시장 (해양수산 과)
2	2022-14 (2022.8.4.)	2022.8.4~ 2036.12.31.	서포면 다평리 1286-5번지선 일원 (갯섬항)	387.2 직:54.0 간:333.2	2022-10 (2022.8.26.)	2022.8.26.~ 2022.8.31.	해상부유구조물 (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) 설치	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	사천시장 (해양수산 과)

# 사 천 시 공 보

제796호

사천시 공고 제2022-1271호

「사천시 주차장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15일

사 천 시 장

##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「주차장법」 개정(2021.12.7.)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가하고,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에 수소차 수소충전시설(수소연료공급시설)을 신설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개정(안 제3조 의2)

# 사 천 시 공 보

제796호

나.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개정(안 제13조의2)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민원교통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> 행정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# 4. 보내실 곳: 사천시장(참조: 민원교통과장)

[(우)52539 /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사천시청 민원교통과]

전화번호: 055)831-3365, 팩스번호: 055)831-6029]

# 사 천 시 공 보

제796호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사천시 주차장 조례

성명(단체명):

주 소:

생 년 월 일:

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

# 사 천 시 공 보

제796호

##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2 - 제 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9.

제 출 자: 민원교통과

### 1. 의결주문

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개정이유

「주차장법」 개정(2021.12.7.)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가하고,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에 수소차 수소충전시설(수소연료공급시설)을 신설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개정(안 제3조의2)

나.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개정(안 제13조의2)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



# 사 천 시 공 보

제796호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주차장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혁신법무담당관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2) 입법예고

가) 기 간: 2022. 9. 15. ~ 2022. 10. 5. (20일 이상)

나) 제출의견: 없음, 건

다) 반영여부: 반영 건, 미반영 건

3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: 반영, 미반영

# 사 천 시 공 보

제796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2조의3제1항”을 “법 제12조의3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2조의3제1항”을 “법 제12조의3제2항”으로, “같은 법 제21조제1항”을 “같은 법 제21조제2항”으로, “개선필요사항 등”을 “개선필요사항등”으로, “연면적”을 “연면적”으로, “이상이어야”를 “이상이어야”로 한다.

6. 「항만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

제1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”이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·제2종 근린생활시설·업무시설·자동차 관련 시설, 수소차 수소충전시설(수소연료공급시설)을 말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의2(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) ① <u>법 제12조의3제1항</u>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도시철도건설사업(「<u>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② <u>법 제12조의3제1항</u>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15조에 따라 교통영</p>	<p>제3조의2(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) ① <u>법 제12조의3제2항</u>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「<u>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6. 「<u>항만법</u>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</p> <p>② <u>법 제12조의3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향분석·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(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③ (생략)

제13조의2(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) ①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 음료·차·음식·빵·떡·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

2. 삭제

3. 삭제

4. 삭제

5. 세차장

6. 자동차 부품 판매점

7. 태양광 발전시설

② (생략)

-----같은 법 제21조제2항-----

----- 개선필요사항등----- 연면적-----

----- 의상이어야 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의2(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)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”이란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·제2종 근린생활시설·업무시설·자동차 관련 시설, 수소차 수소충전시설(수소연료공급시설)을 말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## 관 련 법 규

### □ 주차장법

제12조의3(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) ① 택지개발사업, 산업단지개발사업,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, 도시재개발사업, 도시철도건설사업,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(이하 “단지조성사업등”이라 한다)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7.>

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,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. 19.>

[전문개정 2010. 3. 22.]

### □ 주차장법 시행규칙

제6조(노외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)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(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. 이하

같다)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 <개정 2010. 10. 29., 2012. 7. 2., 2016. 12. 30., 2021. 4. 16.>

1. 관리사무소,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

2. 간이매점,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, 태양광 발전시설, 짐배송시설

2의2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(특별시장·광역시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만 해당한다)

3. 노외주차장의 관리·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

4. 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(이하 “시·군 또는 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

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·광역시, 시·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0. 10. 29.>